

강의중점교원 임용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90
제정일자	2016.09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/3

2016.09.01.제정 2018.01.31.개정 2018.02.28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2.28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08.30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"본 대학"이라 한다.) 강의중점교원(이하 "교원"이라 한다)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02.28.>
- 제2조(정의) 강의중점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되어 본 대학 교육과정상 교과목 또는 본 대학에서 특별히 개설하는 강좌에 대한 강의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교원을 말한다.<개정 2018.02.28.>
- **제3조(자격)** ①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본 대학 교원인 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.
- 제4조(임용방법) 교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(학과)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.
- **제5조(임용절차)**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8.01.31. 2022.02.28., 2022.08.30.>
- **제6조(임용계약기간)** ①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② 교원이 재임용 되지 않을 때에는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7조(강의책임의 시간) 교원의 강의 기본시간은 주 12시간으로 한다.
- 제8조(직무) 교원은 강의를 담당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.
 - 1. 교육 및 연구
 - 2. 학생 생활 상담 및 지도
 - 3. 학생 진로 상담 및 취업 지도
 - 4.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활동
 - 5. 강의 <신설 2019.07.16.>



강의중점교원 임용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90
제정일자	2016.09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/3

- **제9조(복무)** ① 교원은 교육관계법령,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 및 부산경상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.
 - ② 강의중점교수는 총장의 허가 없이 본 대학 이외의 학교·기관 등에 출강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.
- 제10조(보수) ① 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1년 단위 연봉으로 정한다. 단, 기본시간 초과 시에 지급하는 초과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1조(임용계약해지)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
 - 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- 3.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
 - 4. 기타 임용계약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

강의중점교원 임용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90
제정일자	2016.09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3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.